

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5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 . 7. .
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친환경농업육성법제8조(2001.1.26)설치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제8조(법률제9623호,2009.4.1)삭제에 따른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계를 확립하고, 의사결정을 신속 하도록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함에 있어,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정비하여,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규정 전부(제①항~제⑦항) 삭제(안 제4조)
- 나. 위원회의 기능 규정 전부(제1호~제5호) 삭제(안 제5조)
- 다. 회의 및 수당 규정 전부(제①항~제②항) 삭제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붙임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(1) 입법예고 (2014.4.8.~4.28.)결과 : 의견 없음.
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”을 “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”을 “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선정하며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”를 “선정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) ① 시장은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3조(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) ① -----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농업기술센터소장, 친환경농산과장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출장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u></p> <p><u>1.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(소비자, 유통단체 포함)의 대표 또는 임직원</u></p> <p><u>2.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</u></p> <p><u>3. 시 소속 관련 공무원</u></p> <p><u>4.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<u>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</u></p> <p><u>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	

현행	개정안
<p>⑦ <u>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.</u></p> 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<u>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u> 2. <u>농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 시책</u> 3. <u>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에 관한 사항</u> 4. <u>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등 친환경농업육성 발전방안</u> 5. <u>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</u> 	<p><삭 제></p>
<p>제6조(회의 및 수당) ① <u>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② <u>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지원대상 선정기준) 보조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<u>선정하며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u>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10조(지원대상 선정기준) ----- ----- ----- <u>선정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

□ 친환경농업육성법

친환경농업육성법

[시행 2008.2.29.] [법률 제8852호, 2008.2.29., 타법개정]

농림축산식품부(친환경농업과), 044-201-2432, 2433

해양수산부(양식산업과), 044-200-5636, 5635

제8조 (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<개정 2001.1.26>) ①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1.1.26, 2008.2.29>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1.1.26>

1.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
3.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
4.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
5.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타법개정 2008.2.29]

친환경농업육성법

[시행 2009.4.1.] [법률 제9623호, 2009.4.1., 일부개정]

농림축산식품부(친환경농업과), 044-201-2432, 2433

해양수산부(양식산업과), 044-200-5636, 5635

제8조 삭제 <2009.4.1>

[일부개정 2009.4.1]

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개정 2007.4.6., 2007.5.17., 2009.12.29., 2011.7.14.>
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제3장 조례와 규칙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(제3조 관련)

1. 비용수반 요인

- 의안명 :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정안
- 관련조문 : 안 제4조~6조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(작성대상)
 - 1호.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
 - 관련조문 : 제3조제1항제1호
 - 5호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
 - 관련조문 : 제3조제1항제5호

3. 미첨부 사유

-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의 기능·회의수당에 관한규정이 폐지(삭제) 됨으로 인한 일부개정으로, 사업계획 및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,
-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정비하여,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

4. 작성자

-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